

청소년 성 보호와 사회복지의 과제

이 원 숙(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 서론

최근 몇 년간 성폭력과 더불어 청소년 성매매, 특히 원조교제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야기시켰다. 성매매를 당연시하는 풍토,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발달해 온 성상품화의 현상, 급증하는 향락산업 그리고 “영계”를 선호하는 남성성문화 등이 인터넷, 핸드폰 등 정보사회의 첨단 매개체와 접목되면서, 청소년의 비업소형 성매매라고 할 수 있는 원조교제는 더 이상 과거 윤락이나 매매춘은 일반 사회와는 다소 격리된 특정 부류 혹은 특정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가출은 청소년 성매매의 중간매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가출청소년이 당면한 숙식문제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향락산업으로 유입되고 성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 특히 근친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이 성폭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가출을 하고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고 성매매과정에서 다시 성폭력피해를 입기도 하는 사례조차 보고되고 있다.

이와같이 성폭력, 가출, 성매매의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성보호의 이슈가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성매매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로써 보아야 하며 성매매 문제를 수요자인 남성의 처벌을 강화하므로써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을 가져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성범죄자의 처벌 및 신상공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선도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실시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논란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형사정책학회 등에서 이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커다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분야는 성폭력피해자나 성매매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전달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 분야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발표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특성, 성폭력과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청소년 성보호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고찰

1) 청소년 성매매법 제정의 배경

최근 청소년성매매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1997년 9월 출발)'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¹⁾ 주축으로 하는 국가 주도적인 노력이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자녀안심운동 과정에서 가출청소년이 주로 향락업소에서 종사하고 있음이 발견되면서 청소년 성매매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이 1997년 9월부터 1998년 8월 1년간 전국의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적발한 5,048명의 청소년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고용된 전체 여자청소년 중에서 초·중·고 재학생이 20.9%를 차지하였으며 유해업소에 고용된 전체 여성 중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은 54.8%이고, 17세 미만은 30.4%, 16세 미만도 13.6%에 달한다는 것(대검찰청, 1999)을 보여주어 향락업소를 비롯한 성산업에의 청소년의 유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증명해 주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가져온 성과는 그간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서 간과되어 왔던 수요자인 남성을 처벌하지 않고는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며, 이는 청소년성매매에 국한되기는 하였지만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²⁾

1)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청소년 성문화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한달에 한번씩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 아들 지키기' 연세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딸 아들 사고 파는 향락문화 추방 선포식'을 열고 '아버지 감시단'을 결성하였다.

이런 시각변화는 법률안에도 반영되어서, 새정치국민회의는 1999. 11. 4.에 제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한나라당은 1999. 11. 5.에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법률안은 모두 아동과 청소년을 성상품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두 법안 모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김지선·이병희, 2001; 109; 황승흠, 2001, 8-9 참조). 이 두 안은 어느 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1999년 12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0년 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2월 3일 법률 제 6261호로 공포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그리고 피해 청소년 선도·보호 조치의 필요성 때문에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1)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그 입법취지를 설명하였다.

2) 청소년성보호법의 특징

청소년성보호법은 크게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신상공개, 상담·교육 등을 통한 피해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승흠에 의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임을 전제로, 비록 청소년성매매 혹은 청소년성매수행위 등이 청소년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청소년의 매춘’등으로 보지 않고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 혹은 ‘미성년자간간’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내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선도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있어서(황승흠 등, 2001), 청소년 보호 특히 청소년의 성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음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을 관련법과 비교함으로써 이 법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런 시각의 변화는 검찰의 정책변화까지 가져와서, 검찰에서는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징역 형과 함께 신원이 노출되는 2백 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을 구형하여 대부분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보호관찰법상 범인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회봉사명령을 검찰이 구형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었다(김지선·이병희, 2001, 108)

(1) 윤락행위등방지법과의 관계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윤락행위자에게만 초점을 두었으나, 1995년에 개정된 이후 윤락행위자이외에도 윤락행위 배후의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와 윤락행위의 상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 황승흠 등, 2001, 11 참조).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매매행위의 당사자 모두를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남성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 상대자로 규정함으로써 일차적 처벌의 초점을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즉 성매매 여성)에게 맞추고 있었다. 이와같이 윤락행위등방지법은 근본적으로 윤락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춘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을 기준으로 할 때 성매매행위를 한 청소년도 일차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한편 성매수자인 성인남성은 상대자로서 2차적 처벌대상이 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 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성매수자인 성인남성이 1차적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보호 취지를 강화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

1997년 제정·시행되어 왔던 청소년보호법은 1999년에 제 26조 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를 신설하여 미성년자 고용과 성적 접대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처벌조항 등을 대폭 강화시키는 형태로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호, 청소년의 성적 접대행위, 제 2호, 청소년 유흥접객행위금지, 제8호 청소년에게 풍기문란장소제공 금지, 그리고 제9호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특히 제 9호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의 제26조 2 제9호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모두 청소년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되, 청소년보호법은 성적 접대행위와 유흥접객 행위 등 성매매의 매개가 되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다 광범위한 성격의 법이며, 청소년성보호법은 대가성 성적교제행위와 성폭력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에 있어서 성추행과 강간을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처럼 청소년성매매도 청소년유해환경으로의 유입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두 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3) 기타 법과의 관계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형법상 음란물죄나 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로 규율하기 힘든 아동포르노의 제작 배포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아동포르노는 최근 인터넷 상에서 통제불능의 상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어느 특정국가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Jenkins, 2001) 현 시점에서 아동포르노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아동포르노로부터 청소년의 성의 보호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가중처벌대상이 ‘13세 미만의 자’인데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이를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확대시켰다.

요약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특징은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 성범죄행위의 근절을 위해 신상공제제도를 채택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선도보호를 추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보호법과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유희행위자를 1차적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희행위등방지법이 성매매청소년을 처우하는데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으며, 성폭력특별법의 가중처벌 대상범위를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있다.

3)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 된 이후 가장 관심을 받고 논란이 되어 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 20조 및 20조 2항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제도문을 연 2회이상 작성하여 게시 또는 배포하면서, 청소년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 20조 3항에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5항에서는 그 구체적 시기, 기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39).

신상공개 대상은 ① 청소년 성을 매수한자, ② 청소년 매매춘 업주, ③ 아동 포르노 그라피 제작·수입·수출자, ④ 청소년 인신 매매범, ⑤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등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12).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2000. 10.23 대통령령 제 1992호)에서는 제 3조 2항에서 공개되는 사항에 성명(한글과 한자표기),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 기준), 주소(확정판결문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까지만),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제 3조 3항에서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다라고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번지까지)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12).

3. 청소년 성폭력피해 및 성매매의 실태

1) 성폭력피해 실태

성폭력피해는 알려져 있는 피해보다 숨겨져 있는 피해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여기에서는 공식통계, 상담 통계, 그리고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식통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

성폭력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6,093건, 1996년 7,026건, 1997년 7,067건, 1998년 7,846건, 1999년 8,565건, 2000년 9,77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사범은 98년 218건(전체 강간 5,978건의 3.7%), 99년 433건(6,359건, 6.8%), 2000년 594건(6,855건, 8.7%)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 강간 피해자 중에서 20세 미만이 3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이, 2001, 7; 사이버 경찰청 성폭력범죄발생현황 통계자료).

<표 1>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강간	3,669	3,919	5,298	6,173	4,844	5,580	5,627	5,978	6,359	6,855
성폭력치 별법위반				1,232	1,249	1,446	1,440	1,868	2,206	2,920
계	3,669	3,919	5,298	7,405	6,093	7,026	7,067	7,846	8,565	9,775

출처 : 사이버경찰청 성폭력범죄발생현황 통계자료

(2) 성폭력 상담을 통한 청소년 피해분포 및 특성

지난 10여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상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연도별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전체 성폭력 피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연령별 피해분포를 살펴보면, 7세미만은 '96년에는 11.2%, '97년 8.9% 98년 9.4%, 99년 7.4%, 2000년 5.2%, 2001년 8.5%로 전체 평균 8.1%를 점유하고 있다. 7세 이상 ~ 13세 미만은 96년 22.5%, 97년 16.6%, 98년 5.1%, 99년 12.5%, 2000년 11.0%, 2001년 13.1%로 평균 14.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3세 이상 19세까지의 청소년은 96년 23.6%, 97년 23.0%, 98년 21.9%, 99년 19%, 2000년 18.1%, 2001년 17.2%로 평균 20.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연령이 19세 미만이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세 미만으로 집계하고 있어서 19세 미만 피해상담의 정확한 비율을 알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96년 57.3%, 97년 48.5%, 98년 36.4%, 99년 39.6%, 2000년 34.2%, 그리고 2001년에는 38.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996년 5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해 왔으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거의 40%에 근접하고 있다. 물론 이런 성폭력피해상담의 비율은 성폭력 피해를 그대로 반영한다기 보다는 어린이 성추행, 직장내 성희롱 등 그 당시 사회적 관심에 따라 다소 상담이 증감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하겠으나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공식통계에서의 20세 미만 피해자 39.9%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연도별 피해자 연령분포

	7세미만	7-13세미만	13-19세	20세 이상	미상	합계
1996	198(11.2)	401(22.5)	420(23.6)	749(42.1)	11(0.6)	1,779(100.0)
1997	146(8.9)	273(16.6)	380(23.0)	829(50.3)	19(1.2)	1,647(100.0)
1998	197(9.4)	314(5.1)	457(21.9)	1,094(52.5)	23(1.1)	2,085(100.0)
1999	191(7.4)	319(12.5)	504(19.7)	1,447(56.4)	103(4.0)	2,564(100.0)
2000	149(5.2)	316(11.0)	521(18.1)	1,654(57.6)	233(8.1)	2,873(100.0)
2001	245(8.5)	377(13.1)	494(17.2)	1,632(59.8)	121(4.2)	2,869(100.0)
합계	1,126(8.1)	2,000(14.5)	2,776(20.1)	7,405(53.6)	510(3.7)	13,817(10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 1997, 1998 1999, 2000, 2001 및 11차 정기총회(2002)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상담의 특징으로서 어린이, 유아피해가 622건(어린이 377건, 유아 245건)으로 2000년 439건에 비해 약 30% 증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

유아 피해유형은 성추행이 468건(75.2%)로 가장 높으며 일반강간이 116건(18.6%)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617건의 청소년 피해 중에서 강간이 51.8%(256건, 특수강간 39건을 포함하면 295건, 59.7%)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성추행이 32.0%(158건)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어린이 유아에게는 성추행의 비율이 높고 청소년에게는 강간피해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피해 발생율이 11.4%에 이르고 있으며, 성인과 청소년 강간피해 944건 중 108건이나 되며 이중 임신상태에서 상담을 한 경우는 성인이 31건, 청소년이 28건이나 되어, 성폭력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원숙 등의 연구(1999)는 29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7세 미만 유아의 성폭력피해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강간이 22.0%, 성추행이 78.0%로써 성추행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② 피해장소는 공공장소가 4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집이 34.0% 그리고 학교 및 학원이 19.2%를 차지하고 있다. ③ 가해자의 연령에 있어서, 어린이가 33.3%, 청소년이 15.4% 그리고 성인이 51.3%를 차지하였다. 7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살펴보면, ① 강간이 45.0% 그리고 성추행이 55.1%로 강간과 성추행의 피해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피해장소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집이 66.7%로 가장 높고 공공장소(20.0%)로 나타나고 있다. ③ 가해자의 연령별에 의하면, 어린이가 7.3%, 청소년이 20.0% 그리고 성인이 72.7%를 차지하였다. 한편, 13세-19세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강간은 71.1% 그리고 성추행이 28.9%로써 청소년 집단은 그 어느 연령집단보다도 강간피해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② 피해장소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집이 42.4%, 공공장소가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 및 유흥업소(11.6%)도 피해장소로 나타나고 있다. ③ 가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32.5% 그리고 성인이 67.5%를 차지하였다(이원숙 등, 1999, 106-110). 요약해 보면, 7세미만의 유아의 경우 성추행피해가 높고 점차 연령이 높아지면서 강간의 비율이 증가하여 청소년피해에서의 강간피해는 70%를 넘어서고 있다. 피해장소는 유아의 피해장소는 공공장소가 높는데 이는 유치원 등에서의 성추행사건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집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 집이 가장 높으나 공공장소와 숙박 및 유흥업소에서의 피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에 있어서 성인가해자가 많기는 하지만 청소년가해자 심지어는 어린이 가해자도 있어서 이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실태조사를 통한 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가. 성폭력피해

앞서 성폭력 상담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은 성폭력 피해도 입지만 동시에 적은 수이지만 가해를 하기도 한다. 실태조사는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와 가해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라 하겠다.

우선 피해비율과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6)가 서울시 내 중학생 14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1.36%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 경험학생중 여학생은 15.54%로 남학생의 6.97%의 두배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의 유형은 강간이 3.92%, 성추행이 96.08%로 대다수가 성추행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신체접촉, 전화나 통신에서의 음란성 메시지, 성기노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추근거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원의 연구(2000)에 의하면(중학생 대상), 여학생의 38.5%, 남학생의 16.6%가 피해경험이 있고, 야한 이야기(34.3%), 전화/통신의 음란메시지(23.6%), 몸더듬기(11.3%), 성기노출(2.5%), 및 강간(2.1%)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상원·이명숙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2000)에 의하면, 14.5%의 응답자가 성추행 피해(여학생의 20.4%와 남학생의 7.5%)를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에서는 길을 가는 도중이 36.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이성친구와 교제중이 25.4%이고 생일파티 등 모임에서가 6.3%로 나타나 데이트 성폭력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 44.55%로 가장 높았으나 다음으로 이성친구가 27.72%나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 주변의 성인(6.93%) 그리고 근친(6.93) 등으로 나타났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김상원·이명숙(2000)의 연구에서는 성추행 가해자는 “지하철·버스안의 낯선 사람”이 가장 많았고(39.0%), 다음이 “아는 사람”(29.3%), “우연히 만난 사람”(14.6%), 이성친구(5.95), “가족/친척”(3.95) 순이었다. 흥미있는 사실은 여학생의 경우는 지하철·버스안의 낯선 사람이 44.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아는 사람(28.0%)이지만, 남학생의 경우는 “아는 사람”이 가장 많고(33.3%) 다음으로 지하철·버스안의 낯선 사람(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에 따라 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대의 중학생 성폭력피해를 경험하였고 여학생의 피해비율이 높으나 남학생들도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에 있어서 성추행의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여학생의 경우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성친구 도 상당히 있어서 데이트 성폭력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고, 남학생의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었다.

나. 성폭력 가해

청소년은 성폭력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가해를 하기도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66)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1293명 중 45명인 3.48%가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김상원(2000)의 연구에서는 남에게 성폭행을 가해본적이 있다는 중학생은 남학생이 12.7%, 여학생이 5.2%로 나타나서 앞서 연구보다 가해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해유형은 대부분이 성추행이며, 신체접촉, 전화나 통신에서의 음란성 메시지, 음담패설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대상은 모르는 사람이 불과 19.51%로 대부분 아는 사람(80.49%)에게 성폭력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이성친구가 가장 많았고 동성친구와 동네아이들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는 혼자서 행한 경우가 46.67%인 반면 두 명 이상이 가해를 한 경우가 54.55%로 나타나 청소년의 집단적 가해행위를 보여주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2)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태조사는³⁾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최근 1-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이들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은 조사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은경의 연구에서는

3) 청소년 성매매 실태에 대한 양적조사는 주로 비행청소년과 성매매사범, 선도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근 2001년에 주로 이루어졌다. 이은경은 2001년 5월 서울과 6대광역시, 경기지역의 총 38개 학교 50학급을 선정하여 1,97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고성혜(2000)는 1991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기사화된 원조교제 102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원조교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소년원생, 중학교,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비행청소년 575부 그리고 학생 1,489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성혜(2001년)는 가출 및 비행청소년이 수용되어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비롯한 15기관에서 남녀 비행청소년 중 남자 179명 여자 174명을 표집하여 총353부를 분석하였다. 심영희(2001)는 서울경찰청, 서울지검 소년부 자료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선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김종희는 2001년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입건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사건기록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청소년의 1.8%가 실제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혜의 연구에서 원조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1.4%이며, 남학생의 1.5%, 여학생의 1.3%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계의 3.4%가 원조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문계(0.8%), 중학생(0.5%)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은 12.9%가 원조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행청소년 중에서 남자청소년은 9.1% 그리고 여자 청소년은 33.0%가 원조교제 경험을 응답하고 있다(고성혜, 2000, 89).

이로써 일반청소년의 경우 1-2%정도가 원조교제의 경험이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의 성매매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출 및 비행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비율은 10-20%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자청소년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2) 또래집단의 청소년 성매매 경험에 대한 추정

이은경의 연구(2001)에서는 일반청소년은 성매매를 해보았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친구의 비율로 20.4% 그리고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48.6%로 응답하였다. 고성혜(2000)의 연구에서는 한 반에 원조교제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지각한 학생은 29.9%이며 1-2명은 19.0%, 3-4명이 5.2%, 5명이상이 5.7%로 나타났다(고성혜, 2000). 이민희 외(2001)의 연구에서는 약 19%가 같은 방에 원조교제를 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실업고 여자 고등학생(23.8%) 인문고여자고등학생(13.8%)보다 같은 반에 원조교제를 하는 친구가 있을 가능성을 훨씬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3) 성매매 청소년의 연령

고성혜(2000)는 1999년 1월 2000년 10월까지 원조교제기사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 청소년의 연령은 15세가 22.7%, 16세가 23.7%로 가장 높았으며 13세 이하도 8.2%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1999년 14.63세 그리고 2000년에는 16.23세로 평균15.7세였다(고성혜, 2000,9). 심영희(2001)는 15세 이하 중학생 또래가 53.7%(서울지방경찰청자료), 42.7%(서울지검 소년부)로 나타나 실제로 매우 어린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성혜(2000)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은 원조교제를 처음 한 시기가 중1이하 21.7%, 중2 나이 21.7% 중3나이 29.0%로 나타나서(95) 중학교 때가 원조교제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나타났다.

(4) 성매매 접촉방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해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성매매 참여자가 최초 접촉시 사용한 방법은 인터넷이 63.2%, 전화방이 23.0%, 핸드폰이 7.5% 등으로 인터넷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민희 등에서 재인용). 고성혜의 원조교제 신문기사 분석에 의하면, 전화방이 53.0%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인터넷 채팅이 17.7%를 차지하고 있었다. 단 1999년에는 전화방이 64.5%였고, 생활정보지(12.9%) 인터넷 채팅(9.7%) 등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2000년에는 전화방은 47.9%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인터넷 채팅은 21.1%로 급증하였고 친구소개도 9.9%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성혜는 원조교제에 대한 단속이 증가하면서 만나는 방법상의 변화가 있으며, 원조교제를 알선해 주었던 전화방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단속이 지속되자,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있다(2000, 12-3참조).

(5) 성매매의 동기

청소년들의 성매매 원인조사 결과 용돈 마련이 44.7%, 가출생활비가 36.9%, 호기심이 8.4%의 순으로 나타나 용돈 마련과 가출생활비가 가장 커다란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박성동, 2001; 이민희 등, 2001, 57에서 재인용) 등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은 성매매청소년 집단 다음으로 성매매 경험이 높은 집단인데, 이들이 원조교제의 동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33.4%가 유흥비 마련을 위해 22.0%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16.8%가 호기심, 8.2%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7.2%가 생활비가 필요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청소년 중에서도 여자 청소년은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27.2%로 가장 많고, 호기심이 22.0%, 유흥비 마련이 20.9% 등으로 나타났다(고성혜, 2000). 이와같은 맥락에서 일반 청소년들도 소비적 욕구를 성매매의 주요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고성혜, 2000; 박성동, 2001; 이민희 등, 2001)4).

한편, 김성경의 연구(1997)에서는 가출 십대여성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김은실 등의 연구(1999)에서도 십대여성이 향락산업에 유입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가출후의 숙식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십대여성들은 가

4) 고성혜(2000) 일반청소년들은 주위의 청소년들이 원조교제를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써, 갖고 싶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39.1%), 유흥비(5.0%)와 호기심(17.0%)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48.4%가 갖고 싶은 물건을 위해서라고 지적하여 소비욕구 충족을 가장 커다란 이유로 지적하였다. 박성동(2001)의 연구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호가산되는 이유나 청소년 성매매 충동을 느끼는 이유로써, 일반학생과 소년원생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쉽게 돈벌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므로(62.9%, 39.8%), 용돈이 부족해서(39%, 38.1%)로 나타나(박성동, 2001, 이민희 등, 2001, 55-6에서 재인용) 청소년 성매매와 청소년의 소비문화는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 후 밤이 되면 대부분 잘 곳이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자기 업소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주위의 권유가 향락산업에 종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김은실 등, 1999, 36).

이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은 한편으로는 용돈마련,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등 청소년 소비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이라는 매개경로를 통하여 향락산업에 유입되고 여기에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됨을 감안할 때 가출 후 숙식해결방안, 가출생활비 마련도 청소년 성매매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6) 성매매의 영향

원조교제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원조교제 후 성적으로 만족스러웠다는 경우는 21.9%이며, 재미있었다는 경우는 20.5%인 반면,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는 경우는 15.1%,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경우가 15.1%, 자신이 싫어졌다거나 어른이나 사회가 원망스럽다는 경우는 각각 13.7%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일로 생각하거나(23.3%) 자신이 싫어지거나(23.3%), 어른이나 사회가 원망스럽다(33.3%)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성혜, 2000, 99). 아직 성매매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남자 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반응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만족하다(21.9%) 혹은 재미있었다(30.2%)와 같은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남자에게 비교적 성적 허용도가 높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른이나 사회가 원망스럽거나 자신이 싫어지거나 일로 생각하여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반응 등이 높게 나타나서 성매매는 특히 여자청소년에게 유해한 효과를 가진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여자 청소년은 성매매과정에서 거의 피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서(2001, 고성혜; 이민희 등, 2001, 89에서 재인용) 임신 및 낙태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며, 원조교제 과정에서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따른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4. 성매매 및 성폭력의 사회적 배경

1) 청소년의 성의식의 변화

청소년도 성 개방화 추세에 예외가 아니고, 이러한 청소년의 성의식의 변화는 성 관련 행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의식, 이성교제 및 성경험, 그리고 원조교제에 대한 태도 등을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성은 이제 일상적 대화의 소재로 자리하고 있다. 삼성복지재단(1994)에서 10대 남녀 청소년 4,02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7.8%가 자주 또는 가끔 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심영희 등(1999)의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연령 여자청소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⁵⁾ 78%가 성에 관한 대화를 자주 혹은 가끔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85%)은 그렇지 않은 학생(73%)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성관계에 대한 허용도를 살펴보면, 심영희 등의 연구(1999)에서는 고등학생의 성관계에 대한 허용도는 보호시설 및 쉼터거주 응답자의 39%가 남자고등학생의 성관계 그리고 34%가 여자고등학생의 성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일반 학생집단(남자고등학생의 성관계: 인문계 7%, 실업계 10%, 여자고등학생의 성관계: 인문계 4%, 실업계 6%)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80). 이민희 등(2001)⁶⁾의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성친구와의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절대 안됨은 30.8%(남자 22.2%, 여자 43.7%)에 불과하며 상황따라 기능이 60.4%(남자 64.7%, 여자 53.7%) 그리고 전혀 문제없음이 8.9%(남자 13.0%, 여자 2.6%)로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증가함을 짐작케하고 있다(136-137).

김상원·이명숙의 연구에서는 남자 중학생의 43.5% 그리고 여자 중학생의 39.5%가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23), 성경험의 비율은 5.8%(남학생 7.5%, 여학생 4.4%)로 나타났다(29). 성경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 37.8%로 가장 많으나 상대방의 강요(19.5%)와 성폭력(9.8%) 그리고 아르바이트(6.1%)도 있어서 데이트성폭력, 성폭력 그리고 원조교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연령에서의 성경험 비율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심영희의 연구에서는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인문계, 2.5%, 실업계 3.7%, 보호시설 및 쉼터거주 청소년 69.0%)였으며, 최초

5) 조사대상자는 인문계 165명, 실업계 192명, 보호시설 및 쉼터거주 청소년 84명이었다.

6) 서울, 경기와 6대광역시의 14개 중학교, 10개 인문고, 10개 실업고 학생 1452명 분석한 것임.

성경험 시기는 16세가 32%로 가장 높았고 14세와 15세가 각각 17%로 나타나 최초로 성관계를 가진 시기는 중학생 시절이 66%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심영희, 1999).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민희 등의 연구(2001)에서는⁷⁾ 이성친구와의 성행위 경험은 약 6%정도로 남자가 7.8% 그리고 여자가 3.7%이었다. 이 중에서 중학교는 4.0%, 인문고는 3.8% 그리고 실업고는 11.9%(남자 14.2%, 여자 6.9%)로 실업고생의 이성친구와의 성행위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민희 등, 2001).

대다수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학생들은 이를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영희 등의 연구(1999)에서 금전수수와의 관계에서 인문계 고등학생 8%, 실업계 고등학생은 7% 그리고 보호시설 및 쉼터거주 청소년의 30%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리고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25%)이 없는 학생보다(7%) 성관계에서의 금전수수에 대해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다(77). 이민희 등의 연구(2001)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로 하는 성행위에 대해서는 27.8%가 상황따라 가능하다(남자 38.95, 여자 11.0%) 그리고 5.4%(남자 7.45, 여자 2.4%)가 전혀 문제없다고 응답하여서 약 삼분의 일 정도의 청소년들이 상황에 따라 성매매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고성혜의 연구(2000)에서도 원조교제의 제의를 받는다면, 18.3%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7.9%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응답하여서 원조교제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26.2%나 되었다(71) 한번 해보겠다는 응답비율은 중학생(5.4%)보다 고등학생(9.6%)이 그리고 인문계 학생(6.5%)보다 실업계학생(13.5%)이 거의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박/가출경험이 3회이상 있는 학생은 22.3%로 경험이 없는 학생의 5.9%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동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의 원조교제 제의에 대한 태도는 29.9%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는 29.9%, 25.1%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응답하여(90)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원조교제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무엇보다도 이들 중에서 원조교제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2/3정도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하여(91) 일단 원조교제의 경험이 있으면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성혜, 2000)

김은실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십대여성들은 ‘성’을 또래집단내에서 놀이로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십대에게 성적인 행동은 무조건 안된다거나 순결을 운운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생각으로 인식된다(60)

7) 삼성복지재단의 조사(1994)에서는 10대 청소년의 34.5%가 이성교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중학생 22.4%, 고등학생 52.1%, 대학생 56.2%),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4%로 나타나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6%정도의 성관계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술집이나 호프집에서 키스같은 거 다 하나까 기분 나쁘다고 생각 안들어요. 그냥 게임이니까, 노는 것이잖아요. 맘에 들면 (성관계) 할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들은 이래요, 진짜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 순결을 지켜준다고 근데 저희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이와 같은 십대여성들의 성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수용은 십대를 무성적 존재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비춰볼 때 굉장히 급진적이고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십대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싼 여자”, ‘함부로 대해도 좋은 여자’로 인식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기존의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한다.

“핸드폰 비 내주는 오빠가 성관계 하자고 하죠 근데 안해요 싸게 볼까요.”

나아가서 십대여성들은 성을 거래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또래 사이에서 유희비데이트 비용등을 남자친구가 지불하도록 하는 거래적인 관계맺기를 당연시여기고 이는 나아가서 성인남성과의 거래적 성관계를 허용하는 배경이 된다.

“컴퓨터 사장하고 한달동안 원조교제 해봤어요. 50대였나? 30대라고 속였지만... 차타고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거 사주고, 오늘 아저씨 만나자 핸드백 사줄게.. 돈 같은 건 잘 안받았어요”(64)

이와같이 김은실 등(1999)은 십대대여성의 성에 대한 개념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방화되는 한편 기존의 수동적인 성관념이 동시에 내재화되어 있으며, 거래 가능한 자원으로 성을 인식하므로써 성매매의 허용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2) 남성의 성문화

10대 청소년의 성의식이 개방화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남성의 성문화이다. 변화순은 미국과 일본의 성산업과 성문화가 전통적 가부장적 남성 사회의 지배구조에 들어와 폐쇄적이었던 우리의 성문화와 개발독재의 스트레스에 찌든 한국남성들에게 환락과 쾌락의 도출구를 열어준 것이 바로 지금까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의 저질의 퇴폐적 성문화(이민희 등, 2001, 54에서 재인용)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다수 연구가 성매매청소년이나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성매매의 공급자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1999)에서 실시한 남성들의 성문화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락업소에서의 10대 청소년과의 접촉경험, 향락업소에서의 성경험, 남성의 청소년 및 청소년과의 성매매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286명의 남성응답자 중에서 향락업소를 이용한 경험은 85.0%였으며, 단란주점, 룸살롱 등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향락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리고 이러한 향락업소는 개인적인 동기보다 주로 회식, 단합대회 등의 회사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친목도모 모임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향락업소에서 이왕이면 젊은 여성에게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5.7%가 그렇다 그리고 14.7%가 아니라고 응답해 남성들의 젊은 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향락업소를 이용 경험자 중에서 십대청소년들을 만난 적이 있는지에 대해 28.8%가 있다고 응답하고⁸⁾ 41.6%가 잘 모르지만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응답하여 40~70% 가량이 십대 청소년들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남성고객들이 여종업원에게 연령을 물어본 바에 의하면 16-19세 미성년이 33.8% 그리고 20-22세가 50.0%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고용이 불법이므로 이들이 나이를 다소 올려서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20-22세라고 말한 여종업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에 속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남성들이 젊은 여성을 선호하는 이유로써 '깨끗하고 신선해서' 51.7%, '호기심때문에' 21.3%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김지혜는 여종업원의 나이가 어릴수록 세상물정을 잘 모르고 순진해서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향락업소나 남성 손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며, "즐김의 대상"으로서 젊은 여성의 성적매력이 더 크며, 심지어는 정복욕구까지도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⁹⁾

향락업소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은 응답자 286명 중 148명으로 60.9%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십대의 청소년과의 성매매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상당수의 남성들이 자신이 원해서라기 보다는 분위기 짹까봐 참여하거나(27.3%)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는(45.5%) 경우도 많았다.

한편,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요즘 청소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기꺼이 향락업소에서 일을 한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72.3%, "요즘 청소년들은

8) "(십대 종업원을 봤나?) 그렇다 회식에서... 몇 살이나고 물어봤다... 어러보이니까 물어본다... 고2인데, 내일 아침에 학교 가야된다고 말하더라고요"(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12)

9)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요! 남자들이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세상물정을 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대로 하는 그런 것도 있을테구"

"이 여자가 나한테 밥해줄 여자도 아니고 또 와이셔츠 다려줄 여자도 아니고 내 인간적 고민을 들어줄 대상도 아니고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좋아해요. 100이면 90명은 다 좋아할 거예요"

"경험이 적은 여자가 좋으니까요. 살이 탄력적인 면도 있겠고... 일종의 정복욕이라고 할 수 있죠"(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15-6)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관계까지 간다“에 60.5%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서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에게 십대와 매매춘의 기회가 생기면’이라는 질문에 대해 64.0%가 절대 안한다고 응답하였지만 22.7%가 ‘모르고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7.7%가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고 반응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성들의 향락업소 이용뿐 아니라 향락업소에서의 성경험 비율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락업소에서 젊은 여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적으로 상당수의 남성들이 향락업소에서 미성년 여자종업원을 접촉한 경험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3) 청소년 유해업소의 증가 및 청소년 불법고용의 증가

퇴폐적인 남성성문화는 향락산업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되고, 젊은 여성 혹은 ‘영계’를 선호하는 수요자의 욕구는 향락산업에서의 청소년의 불법고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아래에서는 유해업소의 증가 및 청소년 고용의 증가와 향락산업에의 청소년의 유입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¹⁰⁾

(1) 유해업소의 증가 및 청소년 고용의 증가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란주점은 94년 12,133개소에서 95년 17,533개소 96년에는 21,943개소 그리고 97년에는 24,598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01년 6월말 현재 20,111개소를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1990년에는 35만개였던 것이 1999년에는 62만개 그리고 2001년 6월말에는 73만개로 증가하였다(심영희, 1999; 청소년보호위원회 통계 자료, 2002).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된 청소년은 단란주점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단속에 의하면 97년(97.9-98.8)에는 단란 주점에 고용된 청소년은 전체 3,541명 중 1,986명으로 56.1%였고 98년(98.12-99.6.30) 단속에서도 전체 3,517명 중 1,124명,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98년에는 보도방(569명), 신종윤락매체(239명) 등이 전체의

10) 유해업소, 향락업소, 향락산업 등의 용어 등이 학자에 학문적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용된 문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상의 통일이 되어 있지 못함을 밝히고자 하며, 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티켓다방도 97년 단속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집대부가 53.5%로 가장 많았고, 윤락녀 27.4%, 단순고용자가 19.1%로 나타나고 있다(심영희 등, 1999, 30-3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단란주점에 가장 많이 고용되어 있으나 최근에 와서 보도방, 신종윤락매체에 고용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로는 단순고용보다는 오히려 집대부와 윤락녀로 불법고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향락산업 유입의 경로

김성경(1997)도 가출소녀에 대한 연구에서 가출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단란주점, 윤락가, 가라오케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연구대상 30명 중 13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중 12명이 유흥업소에서 취업하고 있었다. 심영희(1999)는 유흥업소에서 여자청소년이 일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 경로로써 가출¹¹⁾ 및 중퇴의 과정 → 중간 매개경로 → 불법고용¹²⁾의 과정으로 향락산업으로의 유입과정을

11) 가출은 청소년의 향락산업에의 유입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의 대표적 경로로서 이의 예방은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20세 미만의 가출인구는 1994년 13,522명, 1995년 16,013, 1996년 19,320, 1997년 19,835 그리고 1998년에는 15,316명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1만 5천명에서 2만명 수준에 걸쳐있다(청소년 보호위원회, 2000)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통계일뿐 실제 가출청소년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 YMCA에 의해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14.8%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원(유성경, 2000)의 연구에서는 11.5%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중고등학생 약 400명을 기준으로 가출경험을 11.5%를 적용해보면 75,364명 연중 약 7만명 가출청소년이 있다고 추산해 볼 수 있다.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시스템 구축, 2000).

위의 연구에서는 가출의 원인으로 개인적 차원, 가정적 차원, 학교차원 및 사회적 차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요구, 요구불만 및 실패 등에 의한 보상심리, 자아정체감의 혼돈,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결여 또는 저하 그리고 가정적 차원에는 가정적 결손, 가정내 불화, 부모의 양육태도상의 문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상의 문제, 가정내의 폭력, 가정의 빈곤 등 심한 스트레스 유발, 학교차원에는 학교의 부적응, 학업스트레스, 교육관계의 부적절, 또래집단의 영향력, 교사와의 관계형성 실패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시장의 발달, 청소년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 무대응,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및 문화시설 부족, 극심한 경쟁체제 등 청소년에게 심리적 압박감, 가출청소년 대응체계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김은실 등의 연구에서는 가출배경으로 또래집단의 문제와 가정문제가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또래 놀이집단과의 동일시(놀리위해, 친구들과라 있기 위해, 자유롭고 싶어서 등)와 저항으로서의 가출(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해서 놀고 그러는 것도 못하게 해요), 가정 및 학교에서의 폭력으로부터의 도피(술만 먹으면 막 때렸어요, 막 죽일라고도 그러구요)을 지적하고 있다.

12) 가출한 청소년들은 18세 미만자의 고용은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자의 동의서가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출 이후 가정미복귀 여자 청소년 중에서 쉼터 등의 보호소에 갔다가 가정,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손쉬운 일자리를 찾아 그러한 청소년들을 노리고 있는 유흥업소에 자발적 내지 선택적으로 불법고용되며(24), 불법고용의 매개경로에는 유인광고물, 직업소개소, 보도방, 인신매매 그리고 신종유희매체가 있다. 한편, 김은실 등은 질적 연구를(1999) 통하여 가출 후 향락산업(단란주점, 티켓다방, 원조교제)등에 유입되는 두가지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가출이후 직접 향락산업으로 유입된 경우이며, 두 번째 유형은 가출이후 한동안 또래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남자친구와 동거 또는 향락산업 이외의 대안을 모색하다가 결국 향락산업에 유입되는 경로이다.

심영희 등 그리고 김은실 등의 연구에서는 최근에 와서 가정에서 머물면서 유흥업소에서 접대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유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은실 등(1999)의 연구에서도 가출하지 않은 채 향락산업에 종사하는 세 번째 경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신종향락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교제, 080전화방뿐 아니라 집에서 주말에만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등 십대들의 향락산업 유입의 경로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가출 혹은 중퇴는 청소년이 향락산업으로 유입되고 성매매를 하게되는 대표적 경로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와서 가정에서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는 새로운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다.

(3) 향락산업에 유입의 특징

1997년 9월부터 98년 8월까지 대검찰청이 단속한 결과 나타난 청소년의 고용경로별 현황을 보면 구인광고가 42%, 보도방 13.3%, 직업소개소 9.1%와 같이 유흥업소의 전통적인 매개경로가 주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친구소개도 35.5%나 차지하고 있다(대검찰청, 1999,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백서). 김은실 등의 연구(1999)에서도 가출후 곧 바로 향락업소로 유입된 15사례 중 10사례에서 친구, 선후배 등 십대의 일상적 생활속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중간매개자로 밝혀졌으며, 가출 후 대안을 모색하다가

필요하므로 실제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청소년기에 유혹받기 쉬운 유흥업소나 퇴폐업소등의 불건전한 일터에서 아르바이트하거나 쉬게 청소년 성매매에 유입되어 손쉽게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최영애, 2001, 청소년 성매매와 대처방안, 청소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소년문제 정책포럼 107-108, 서울 :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상담원, 111 참조). 더구나 청소년 성매매는 다른 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적 큰 돈을 벌게 되므로 성매매과정에서 소비가 크므로 부채를 지게 되는 등 실제적인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경험한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하기 어렵고 설사 다른 일을 하다가도 성매매로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다(이민희 등 2001, 김은실 등 1999; 김성경, 1997).

향락산업에 유입된 6사례에서도 1사례 만 제외하고는 또래, 일하면서 알게 된 또래 등 친분이 있던 사람의 소개로 유입되었다(“선배언니가 단란에 다녔는데요. 한번 다녀보라구 그래서 나가게 됐어요” “업소는 같이 놀던 애 소개로 들어가게 된거예요”). 이는 십대의 일상에 다양한 중간매개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십대들이 별다른 부담감, 거부감 없이 향락산업에 유입되는 매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특정업체에 고용되지 않은 신종유희매체를 통한 원조교제의 확산은 더욱 우려되는 현상이다(심영희, 1999). 즉 이벤트 유희 및 전화사서함 폰팅 등 신종유희매체를 통하여 미성년 소녀가 용돈조달 등을 목적으로 유희를 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단속이나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는 향락산업 종사 유형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향락산업에 종사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가출을 하지 않고 집에 거주하면서 원조교제, 폰섹스 등을 통해 남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단란주점이나 호프집에서 성적서비스를 판매한다(김은실 등, 1999)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가출한 십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친구 선배 등이 주요한 중간매개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향락산업에 대한 무지, 유희행위의 보편화, 불법고용 청소년의 저연령화 등은 향락산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4) 청소년의 유해문화 및 소비문화

김시업은 이동전화와 인터넷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보급과 대중화에 힘입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고, 누구나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원조교제 현상이 확산되었다고 지적한다(김시업, 2000, 14-5) 실제로 청소년들은 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화방, 핸드폰 등 손쉬운 원조교제 환경” 그리고 “인터넷 등 음란성 유해매체“ 등을 지적하고 있다.¹³⁾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매매 청소년들은 원조교제시 인터넷, 전화방, 핸드폰 등을 주로 사용하여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

13) 이민희 외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원조교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화방, 핸드폰 등 손쉬운 원조교제 환경 때문이다(18.2%),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다(12.3%), 사고 싶은 것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1.6%),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다(8.6%), 인터넷 등 음란성 유해매체가 널려있어서(8.3%), 친구의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7.7%), 남성위주 성인들의 문란한 성문화때문이다(6.7%), 가정, 학교, 사회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5.6%), 성인들의 건전한 도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4.7%) 등을 지적하고 있다(이민희 등, 2001).

타나고 있다.

일본의 원조교제가 여중고생들의 지나친 소비문화와 만나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소비문화는 청소년 성매매를 조장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인들의 사치성 소비향락문화가 청소년들에게도 모방되고 있으며, 비판적 수용능력이 없는 청소년은 성매매를 통해서라도 사고싶은 것을 사고자 하는 왜곡된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성매매 이유에는 가출 후 생활비 마련과 같은 현실적 이유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돈마련, 유흥비, 사고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등이 자치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5) 사회적 합의의 부재

김시업은 원조교제와 성인 매매춘이 전자는 일시적인 일탈행위이고 후자는 지속적 직업이라는 점과 전자는 상호합의적 행위이고 후자는 의무적 행위라는 점 등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원조교제와 매매춘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유사성이 높으며, 진입경로, 돈이 대가로 주어진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원조교제는 매매춘의 또 다른 하위형태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흔히 원조교제와 10대 성매매가 다른 차원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으며(김시업, 2000, 15-6), 원조교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의 절반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동아일보, 2000년 7월 20일자-원조교제 구속영장 기각율 50%넘어, 한겨레, 2000년 1월 11일자-원조교제 영장 잇단 기각에 법원-검찰 갈등 등)고 지적하였다.

서울대조교사건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데, 원조교제에 대한 시각차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원조교제를 아직 하나의 범죄로 구성하는데 합의하지 못했음을 증명해 준다. 이에 따라 원조교제를 바라보는 사회구성원들의 시각은 '보호해야 할 청소년에 대한 과렴치한 범죄'라는 시각과 '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시각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 부재 역시 청소년 성매매의 근절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김시업, 2000 참조).

5. 청소년성보호법의 신상공개제도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은 신상공개제도였다. 신상공개에 대하여 남자 87.15 여자 92.7%라는 높은 찬성비율 그리고 원조교제 신분공개에 대해서도 남자 61%, 여자 76%가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¹⁴⁾ 본 고에서는 신상공개제도는 흉악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예를 들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성추행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아동보호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지역사회를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폐지하기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 신상공개의 대상자가 주로 성폭력가해자라는 점에서 이의 타당성은 크다고 하겠다. 신상공개제도는 이 법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메간법과¹⁵⁾ 비교함으로써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하며, 신상공개제도에 위헌논의 등은 연구범위를 넘어서므로 제외하고자 한다.¹⁶⁾

1) 미국의 메간법에 대한 고찰

미국의 메간법은 성범죄자 등록제도에 관련된 웨터링법, 메간법, 팸 라이크너법의 3가지 법종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지역사회에 통지하는 법이다. 이들 법의 유래는 한 사회에서 성범죄자의 등록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1) 유래

이들 세가지 법은 모두 성폭력 피해자를 기념하고 있다. 우선 웨터링법의 유래를 살펴보면, 1989년 10월 11살의 제이콥 웨터링은 자전거를 타고 그이 동생과 친구와 함께 비디오를 빌리기 위해 미네소타의 세인트 조셉에 있는 그의 집에서 가까운 가게에 갔다

14) 2001년 12월 6일에는 한국법심리학회, 법과 사회이론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가 모여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을 하였던 바, 동일한 학회에서도 발제자와 토론자의 의견이 상반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구체적 내용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001 참조할 것.

15)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해설(2000)과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2001)에서 모두 메간법을 소개하고 있다.

16) 신상공개제도의 헌법적 이슈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반여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평등원칙 위반여부 그리고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여부, 적법절차원칙의 위반여부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황성기(2001), 황승훈(2001) 등을 참조할 것.

가 돌아오는 길에 나이론 마스크를 한 총기를 가진 남자가 막아섰고 친구들은 달아났으나 웨터링은 실종되었다. 수사에 의하면, 웨터링 실종사건의 용의자인 성범죄는 출소후 세인트 조셉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한 바 있다.

다음으로 메간법은 강아지를 보러오라고 메간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 이웃이 메간을 강간·살인하고 근처 공원에 시신을 유기하였는데, 이 사람은 두 번의 소아에 대한 성적 도박의 전과가 있는 자였다. 메간의 사건은 성범죄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음을 주민이 알게 된다면 이런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였다.

한편, 1990년 8월 휴스턴의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팜 라이크너는 고객에게 빈 집을 보여주려고 갔는데 빈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잔인하게 비행승원원을 성폭행했던 두 번의 전과가 있는 중범죄자였다. 라이크너는 때마침 달려왔던 남편에 의해 위험을 벗어났고 그 후 성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전국적인 전산 데이터 구축을 위한 법안제정에 관여하였으나 1996년 비행기 사고로 숨졌다.

(2) 입법 및 주요 내용

제이콥 웨터링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대상 범죄 및 성폭력범죄자 등록에 관한 제이콥 웨터링법(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은 1994년 연방폭력범죄 억제 및 그 집행에 관한 법(the Federal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에 포함되면서 보다 광범위한 등록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메간의 사건을 계기로 의회는 연방 메간법을 통과시키면서 1994년 폭력범죄 억제 및 그 집행에 관한 법을 1996년 개정하여서 1997년 9월까지 지역사회 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1996년 성범죄자 추적 및 신원확인에 관한 팜 라이크너 법(the Pam Lychner Sexual Offender Tracking and Identification Act of 1996)은 폭력범죄 억제 및 그 집행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성범죄자의 소재와 이동을 추적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황승흠, 20-25)

그리하여 이 세가지 법은 성범죄자의 등록, 지역사회 통지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토대로 한 추적 및 신원확인의 연계적이며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청소년성보호법의 신상공개제도의 목적, 특징 및 효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는 첫째,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의 제고와 범죄예방효과의 강화”를 들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신상공개제도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의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한 정보제공”도 하나의 입법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르면,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은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성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처벌·보완처분 등 전형적인 형사제재 이외의 새로운 형태의 범죄예방수단”이라고 파악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예방활동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제공행위”라고 파악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 둘째, 신상공개의 ‘주체’가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점, 셋째, 신상공개의 ‘시점’이 당해 범죄에 대한 형이 확정된 이후라는 점, 넷째, 신상공개의 ‘대상범죄’가 단순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청소년성매수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행위,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신상공개의 ‘대상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행위를 한 성인에만 국한되지, 동일한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상공개의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신상공개의 ‘대상사항’에는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되지만 당해 범죄자의 사진이나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 주소의 읍·면·동 및 번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일곱째, 신상공개의 ‘방법’으로 특정한 일정 부류의 사람들(예컨대 당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범죄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제공을 그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공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황성기, 2001, 51).

이런 신상공개의 대상, 방법 등 때문에, 김지선·이병희(2001)는 현재의 신상공개제도는 특별예방적 효과보다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상공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하(威嚇)를 주어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¹⁷⁾

즉, 현행법에서 방법이나 절차는 잠재적인 피해를 보호하기보다는 범죄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어 그 수치심에 의한 재범방지와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위하력을 주고자 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황승흠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는 공개되는 사항들이 특정한 개인을 기별할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공개방법이 당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사회단체, 이웃들에게만 신상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의 제고와 범죄예방효과의 강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18).

(3) 미국의 메간법과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의 비교

황승흠은 미국의 메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신상공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황승흠, 2001).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성보호법은 신상공개만을 제도화한데 반하여 메간법은 지역사회통지법으로써 이를 근간으로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성범죄자 추적 및 신원확인제도를 동반하고 있다.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기록의 관리차원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할 수는 있다고는 하나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효과의 차원에서 볼 때 등록제도의 유무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등록제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신상공개는 자칫 일회성의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방위의 효과는 그만큼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웨터링법에서는 성폭력흉악법에 대한 특별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모든 공개대상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성폭력흉악법은 피해의 위험수준이나 재범가능성의 측면에서 단순한 성매매 사범과는 달리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셋째, 등록제도의 관리 측면에서 웨터링법과 라이크너 법은 등록의무자에게 매년 또는 매 90일 마다 등록정보 갱신의무를 부과하여 가장 최신의 등록정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의 신상공개제도는 등록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신상공개시의 정보조차도 유죄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공개시점에 이르러서는 정보의 최신성

17) 김지선·이병희(2001)에 의하면, 특별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두고 형벌을 통하여 범인을 교육 개선함으로써 범인 그 자체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을 말한다. 일반예방은 형벌을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의 범죄예방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잠재적 범죄인의 위하에 의하여 장래의 번지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 일반예방과 일반인에게 규범의식을 강화하여 범죄를 준수하게 하는 적극적인 일반예방으로 나누어진다(43-4).

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보호의 효과를 감소시키게 된다.

넷째, 등록기간 혹은 공개기간의 측면에서 볼 때 웨터링법은 석방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적어도 10년간 등록 그리고 성폭력흉악법의 경우 더 이상 성폭력흉악법이 아니라는 결정이 없다면 평생동안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6개월의 공개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범죄자의 지속적 관리측면에서의 효과성이 크게 감소된다고 하겠다.

다섯째 등록시점 또는 공개시점에 있어서, 미국법에서는 등록시점을 출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당해 범죄에 대한 형이 확정된 이후이다. 전자의 경우 성범죄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보호의 효과가 높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상공개의 시점에 성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에서처럼 이미 사회에 복귀하고 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성범죄의 예방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공개방식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인터넷 공개를 하는 주정부도 많지만 적극적 통지, 제한적 공개, 수동적 통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인터넷 공개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개방식을 지역사회보호의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인터넷 공개이외에도 성추행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 등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 신원을 포함하는 적극적 통보의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상공개제도가 지역사회보호의 효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범죄자 등록제도가 보완 될 필요가 있으며, 흉악한 성폭력성범죄자 등에 대한 특별관리, 등록정보의 최신성 확보의 문제, 범죄 유형에 따른 공개기간의 차별화 및 공개방법의 다양화 등의 이슈를 두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성폭력 및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실태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과 함께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주

요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둘 것을 규정하지 않고 윤락행위등 방지법상의 선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를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매춘 범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과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은 그 치료와 상담의 방법과 내용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의 상담 등은 반드시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성폭력상담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여기에서는 성폭력피해 청소년은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에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라는 점 그리고 성매매 청소년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단속 등에 의거하여 처우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기 살펴보고자 한다.

1) 성폭력 피해 청소년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 기관은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들 수 있으며 최근 16개 권역에 설치된 여성1366이 성폭력피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위기전화로써 기능하고 있다. 2001년 7월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현재 92개소가 있으며 이중에서 47개의 성폭력상담소와 7개의 장애인성폭력 상담소가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전국에 8개 시설이 있으며 이중 6개 시설이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여성부, 여성폭력방지종합정보).

국내 성폭력상담소의 현 위치를 살펴보면, 첫째,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성폭력상담은 페미니스트운동에서 출발하였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대명제에서 성폭력상담과 아내학대상담이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되었고 한국 여성의 전화 지부, 가정법률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회, YWCA 등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폭력상담소가 발전되어왔다. 1990년 후반부터 대한가족복지협회에서 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하고 2001년에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중심으로 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고 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 40여 개였던 성폭력 상담소가 2001년 6월에는 82개소, 2001년 7월 현재 92개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설립주체도 다양해지고 있다(이원숙, 1999; 여성부, 성폭력방지종합정보).

둘째,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폭력상담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대다수 성폭력 상담소들은 페미니스트 철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설립주체의 다양화는 사회복지모델 등 성폭력상담의 다양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셋째,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출발했던 국내 성폭력상담소는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우조교사건 등 여러 성폭력 사건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활동하여 성폭력문제를 사회문제화하는데 성공하였고, 성폭력특별법을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성희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성폭력추방주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사회운동적이며 제도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는 위기전화상담을 주축으로 일회적 서비스에 그치고 있어, 1997년도에는 총 상담회수 3,424회에서 면접상담은 232회(6.7%), 1999년도에는 총 상담회수 5,397회에서 면접상담은 481회((8.9%) 그리고 2000년도에는 상담횟수 4164회에서 면접상담은 582회(13.9%)로 점차 면접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 1997, 2000, 2001). 그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 및 집단적 치료프로그램, 가해자를 위한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 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발달이 미흡하다고 하겠다. 이는 국내 성폭력상담소가 여성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성폭력상담원 자격(64시간)을 가졌을 뿐이며 여성부의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원이 주로 성폭력상담원 그리고/또는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증을 주로 가지고 있으며, 25.2%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등(2001, 여성부, 343) 사회복지 등 원조전문직의 체계적 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많지 않았다는데서 오는 문제점이라 하겠다.

넷째, 최근 2-3년 동안 성폭력상담의 연계망 구축은 커다란 관심을 모았고(한국여성개발원, 1999; 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의 전화, 2001 등 참조) 2001년부터 개편된 전국 16개 여성 1366에서도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간주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여성부, 2001, 265-269). 마지막으로, 외국에서는 성폭력상담과 아내학대상담이 모두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출발하였지만 이들이 각각 분리된 기관으로 발달된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여성의 전화 등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 기관에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모두 설립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 여성부 등에서 이에 대한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보호시설은 전국8개소에 개설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 접근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서울 2, 부산 3, 경기 2, 전북 1개소),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은 2001년도 3월 현재 93명 정원에 37명의 입소자가 있어서(여성부, 2001, 106)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 아동과 장애인 등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로템나무집, 2001;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1) 피해자의 장기적 보호를 위한 그룹홈 등(한국여성장애인 연합, 2001)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보호시설 역시 종사자의 질적 수준 향상, 서비스

프로그램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향상 등 성폭력상담소와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2) 성매매 청소년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가치판단 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비록 자발적으로 성매매 대상이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성매매 대상이 되게 한 제반 사회적 여건 및 관련자들에게 책임 소재가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범죄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경찰이 단속 등을 통해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무조건적인 귀가 또는 훈방조치가 아니라 검사의 판단에 의하여 귀가조치하거나 소년부 판사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2000, 20)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소년법 제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위탁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위탁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1).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1호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2호처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3호처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4호처분), 병원·요양소에의 위탁(5호처분), 소년원에의 단기송치(6호처분), 소년원송치(7호처분) 등의 7가지 유형이 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시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법상의 7가지 유형의 보호처분과 선도보호시설에의 위탁처분의 두 가지로 국한되고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상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체적인 지원망을 구축하는 대신 그 효과성의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윤락행위등방지법상의 선도보호시설을 활용하도록 한 점이다. 다음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이후 대상 청소년에 대한 처리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대상 청소년에 대한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만 248명을 적발하여, 전체의 86.3%인 214명이 보호자에게 인계되었으며, 4.0%인 10명이 보호시설로 인계되어 전체적으로 귀가조치를 받은 청소년은 90.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소녀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는 12명으로 4.8%에 불과하였으며, 형사입건은 10명으로 4.0%를 차지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성매매 청소년을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 방법은 귀가조치였는데, 이들에게 서비스나 치료프로그램의 제공없이 단순 귀가조치를 하게 될 경우 성매매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전무한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 이들 중에는 가출청소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부모/가족원의 신체적 폭력, 부모의 불화, 부모의 잔소리·언어폭력/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무관심/차별대우, 부모의 이혼/재혼/가출, 가족원의 성폭력, 가정의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가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성경, 1977, 66) 가족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능력은 극히 취약한 상태라고 하겠다. 특히 버려진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는(김향초, 2001) 부모가 청소년을 버렸으며, 탈출형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탈출한 것이므로 부모의 적절한 보호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현재 극히 일부 청소년만이 보호시설로 인계되고 있는데, 청소년쉼터가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지선·이병희는 사법경찰과의 면접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청소년을 보호시설에 인계할 수 있는 기관은 청소년 쉼터나 선도보호시설인데, 해당 청소년들이 선도보호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쉼터에 비해 통제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쉼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한다(김지선·이병희, 123-124). 청소년 쉼터는 과거 극단적인 통제로 인하여 인권시비까지 있었던 선도보호시설에 비해 비교적 통제가 적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으며, 적어도 청소년이 선호하는 시설로 인계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의 측면에서의 효과는 단순귀가 못지 않게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자발적으로 입소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입소 기간을 1일~6일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길어야 1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선도 효과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인계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다시 집도 아니고 보호시설도 아닌 또래집단의 공간으로 재가출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이 상황에서 다시 성매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어렵게 마련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대상들의 유동성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법적인 강제력을 동반하는 보호처분으로 시설에 위탁하기를 바란다는 애로점이 호소되기도 한다(백승진, 2001; 39, 문화관광부 장관 주최 ‘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대책’ 간담회 내용; 김지선·이병희, 2001, 125에서 재인용)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건은 아직까지는 극히 적으며, 현재로서는 대다수가 보호관찰처분을 주로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 장기보호관찰처분인 1·3호 처분이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하반기 선도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유형을 보면 부모 동의하에 대부분을 차지하며(86.1%), 보호처분에 의한 것은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미루어 윤락행위등방지법상 선도보호시설위탁처분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대다수 성매매청소년은 단순귀가 조치를 받고 있으나, 가족의 보호기능이 취약한 경우 선도보호의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소년부 보호처분과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효과도 의문시 되고있다.

7.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적 과제

성폭력상담과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은 다소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폭력 상담은 피해자의 자발적 서비스 요청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매매 청소년은 단속된 청소년이 주 개입 대상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이 그동안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의 관여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비교적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반면, 성매매분야에서는 윤락여성 등 문제에 여성단체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나(한국여성단체 연합, 2001)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보다 많이 관여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1) 성폭력 피해자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기본적으로 상담소는 시설장을 포함한 3인 이상 등 설치기준에 준하면 신고에 의해 설치가 되고 그 후 상담실적 등에 의거하여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연 5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01년 6월 82개로 집계되었던 성폭력상담소가 2001년 7월에는 92개로 집계되는 등 급격하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성폭력 상담원의 자격기준이 64시간의 교육에 그치고 있어서 상담원이 개인적인 학력 등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한 전문성 문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폭력상담소들은 사회운동적 측면에서는 성폭력특별법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일회적인 위기전화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체적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의료, 사법, 사회복지, 심리 전문가 등 자원을 연계하는데 치중해 왔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성폭력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분야가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성폭력상담소 등에 사회복지사가 보다 많이 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

폭력상담소의 종사자들의 일부가 대학원 등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추세가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종사하기 시작하고 있으니 만큼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성폭력상담원의 자격증 교육이 기존의 64시간 교육으로는 부족하므로 종사자들은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나 현재 성폭력상담원 자격증 소지자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상담소의 인력 구조 및 대다수 상담소가 극히 최근 개설하였기 때문에 짧은 역사로 인한 실무에 대한 노하우 축적 기회의 부재 등으로 인해 계속 교육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개념이론 및 기술, 기법 등에 대한 지식은 수준 높은 계속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모델에 의한 보다 전문적 치유기관으로써의 성폭력상담소의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다수 성폭력상담소는 상담을 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일상생활보호와 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등을 지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할애되고 있는 형편이며, 상당부분의 서비스가 자원봉사자에 의거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의 지속문제, 질적 수준의 유지 등의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다. 장기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후유증은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개별상담, 집단 상담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성폭력피해자 치유 전문기관을 설립한다면 기존의 성폭력상담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들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기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이를 담당할 적절한 기관이 부재하다. 현재 성폭력상담소가 가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므로 대체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는 관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다. 보호관찰에서도 가해자 교육을 위탁할 기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기관이 없다는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가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 왔으므로 가해자를 위한 전문적 치료기관을 개척한다면 기여도가 높을 것이다. 최근 청소년가해자가 치료없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청소년가해자는 적절한 치료없이 그만큼 앞으로 가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 치료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에도 6개월 또는 1년 동안 시설보호를 하면서 집중적인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섯째, 아동 보육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서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요청된다. 아동 및 장애인 시설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실무자간에 상당히 회자되어 왔으며, 최근 장애인 성폭력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및 치료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여섯째, 사회복지사는 그 어느 전문직 보다 성폭력 피해의 위험집단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 위험집단에 대한 예방적 접근, 피해자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2)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는 사회복지체계 이외에도 가족과 학교 등 다양한 체계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만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가출 및 청소년 성매매 관련 문헌에서는 학대를 하거나 폭력적이며, 자녀를 방치하거나 심지어는 청소년을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하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 역기능적 가족,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과 폭력이 발생할 뿐 아니라 가출청소년이 되돌아오더라도 백안시하는 학교,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과 향락산업의 유착 문제, 청소년 고용기회의 부족 등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대안교육의 개발, 성적자기결정과 성문화에 대한 분별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교육의 도입, 사회문화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및 성문화를 위한 청소년 여가 시설의 확장, 그리고 경찰 및 검찰 등 사법분야에 있어서 향락업소로의 유입을 방지하고 유입된 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향락업소를 단속하고 유착관계를 없애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표의 연구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청소년 성보호문제는 사회복지체계이외에도 여러 분야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예방적 차원과 치료적 차원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접근이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향락산업에 유입되거나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성매매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며 설사 나오더라도 어려움에 봉착하면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방적 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가족기능을 강화시켜 가출을 예방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부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해 나가

야 하겠다.

둘째,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전문요원 들은 빈곤가족을 비롯한 고 위험 가족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청소년들의 가족 및 학교에서의 적응을 도와서 청소년 성매매의 시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출을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가출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학교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 차원에서 이들의 적응을 돕는 개별적 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학교사회사업이 제도화를 노력해야 하겠지만, 일부 복지관에서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학교와 연계를 맺어 학교사회사업을 실시해 나가야 하겠다. 이와같은 학교와의 연계는 학교에서 문제를 가진 학생들에게 퇴학 등의 조치를 처하기 이전에 복지관에서의 봉사명령 등의 완충장치를 두도록 제도화해 나갈 수 있어서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복지관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가출 및 성매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등 서비스 그리고 향락산업의 실상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하겠다.

다섯째, 가출을 시도하거나 현재 가출 중인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서 아웃리치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외국에서도 가출이후 청소년들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써, 이동차량 등을 통하여 매일 일정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고 가출 후에 갈 수 있는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기관에 의뢰를 해 주도록 한다.

여섯째, 가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현재 가출 청소년이 대체적으로 귀가조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가출청소년은 귀가해도 가정과 학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버려진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귀가조치 위주의 정책이 전환되어서 이들 중에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요청된다.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기존의 일시보호성격을 가진 쉼터로서는 장기적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직업훈련, 고용알선, 사회복지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단계적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그룹홈 등의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치료적 차원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가출후 향락산업으로 유입되면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가정에서 머물면서 원조교체를 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유입경

로의 다양화를 고려하면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대다수 성매매 청소년이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쉼터 등으로 인도되고 있으나 이들이 재가출하여 다시 성매매로 유입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은 근본적 문제는 자체적인 피해자보호시설을 구축하는 대신 기존의 선도보호시설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6호, 7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의 그 효과성이 극히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설이 점차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소년원에서는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성매매 청소년이 함께 보호하므로써 범죄습득 등의 부작용이 예측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성매매 청소년을 함께 보호할 경우 성적 행동화 후유증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이 성매매 유입을 조장할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어서 성매매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보호는 거의 기피되고 있으나, 치료적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은 채 단속후 귀가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다시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들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치료 및 선도하는 할 수 있도록 4호처분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실정에서는 적절한 위탁보호시설이라는 대안이 부재함에 따라 효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귀가조치를 취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학업의 지속, 현대사회에 부합되고 성매매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실질적으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 있어야만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성매매 청소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부 청소년이 보호처분(1·2호, 1·3호)을 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은 1인당 224건으로 이는 미국 38.9건, 일본 47.4건, 영국 13건 등 외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서 보호관찰관을 증원하고 가능하면 성매매 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훈련을 갖춘 보호관찰관을 추가로 증원한다면 귀가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성매매 청소년을 가정에 복귀시켜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면 이 제도가 보다 효과적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가 효과를 거두려면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청소년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사법분야에 고용되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이 단속되면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조사관도 부족하지만 전문성이 없어서

조사내용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조사제도에 사회복지전문직을 투입한다면 전문적 조사에 의한 보호처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병원 요양소 등의 5호 처분의 활용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 심리학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부모에게 귀가되는 처분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Flowers, R. Barri. 2001. Runaway Kids and Teenage Prostitution America's Lost, Abandoned, and Sexually Exploited Children. Westport. Greenwood Press.

고성혜. 2000. 원조교제의 실상과 대책.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김상원·이명숙. 2000. 중학생의 성의식조사 및 성교육자료집 개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성경. 1996.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성이. 2001. 청소년 성보호와 사회복지의 과제. 강남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 워크샵.

김시업. 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은실 등. 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일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여성특별위원회.

김지선·이병희. 2001.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김향초. 2001.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개입방법. 나눔의 집.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부설 로렘나무집. 2001. "영혼에 대한 폭력" 가정내에서의 아동성학대.

서울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가정폭력·성폭력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심영희 등. 1999. 유해업소 고용 여자청소년을 위한 사법·복지·교육대책.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 2001. 여성폭력방지 종합 대책 방안(첨부자료).

이민희 등. 2001.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연구 -원인과 실태분석 및 대책마련을 중심으로 -.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이원숙 외. 1999. 성폭력 상담의 현황과 과제. 폭력없는 사회 가꾸기 토론회 - '99 여성폭력실태에 대하여 -. 폭력문화추방을 통한 "안심하고 딸, 아들 키우기" 전국 캠페인. 한국여성단체 연합.

이원숙. 1999. 성폭력상담소의 과제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 33.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한국법심리학회 등. 2001.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2001 학제간 심포지엄.

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청소년성문화를 통해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세계성폭력추방주간 세미나.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1999. 2000. 2001. 나눔터.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십대의 성산업 유입과 남성 성문화. 제6차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의 진화. 2000.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망 형성을 위한 워크샵.

한국여성단체연합. 2001.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1.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 관련 토론회.

황성기. 200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001 학제간 심포지엄.

황승흠 등. 200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